

# 정보통신 표준화 체계 변경



정보통신부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한국통신기술협회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개칭되고 업무영역이 정보통신 표준화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전기통신 표준화지침, 전산망표준화지침,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취급지침을 폐지하고 이들 지침들을 통합, 체계화한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을 지난 5월 24일 고시하였다.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기존의 전기통신 표준화 세부지침과 정보통신 표준화 위원회 조직 변경을 포함한 운영규정(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전문)과 2. 정보통신 표준화 위원회 조직(잠정) 변경사항을 표준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며,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은 정보통신 표준총회(97. 7. 3)에서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1. 정보통신표준화 지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전파법 제28조의2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보통신표준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 표준화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정보통신표준”이라 함은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축적 활동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주체간에 합의된 규약의 집합(이하 “표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단체표준”이라 함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③ “국가표준”이라 함은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부처 등 국가전체에 영향을 주는 표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④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 제2장 표준의 제안 및 채택

**제3조(표준화 과제의 제안)** ① 정보통신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제안하고자 하는자는 누구든지 협회에 표준화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표준제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표준화 대상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없더라도 스스로 표준화 대상을 제안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회에 표준화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4조(표준화 과제의 채택)** ① 협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의 제안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화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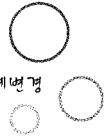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 채택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적재산권 문제를 사전 해결한 후 표준화 과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안의 작성)** 협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화 과제에 대하여 협회 회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 ① 협회는 작성된 표준(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의 단체표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단체 표준에 대하여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속한 표준화 절차)** 협회는 기술발전 추



세,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표준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속한 표준화 절차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국가표준 건의)** ① 협회는 협회의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안)의 건의에 있어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무상 또는 합리적인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의 확약서를 지적재산권자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표준 채택예고)**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건의한 국가표준(안)을 채택하기 전에 관보 또는 협회 간행물 등에 60일간 국가표준 채택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채택예고기간중 당해 표준의 채택에 의견이 있는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채택)**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않거나 의견이 원만하게 수렴이 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고시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해 표준(안)을 국

가표준으로 채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준채택을 중지하거나 협회에 이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표준번호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가표준은 “한국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표준번호 앞에 KICS를 부여한다.

**제12조(표준의 개정 및 폐지)** 국가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표준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표준연구개발)** ① 개인, 단체, 연구소, 공공기관 기타 누구든지 정보통신분야의 표준을 연구개발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 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보통신기술표준
2. 한국전산원 : 정보화 관련 표준
3. 시스템공학연구소 :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

4. 정보보호센터 : 정보보호 관련 표준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표준을 협회에 제안하여야 한다.

**제14조(표준연구개발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연구개발기관에 필요 한 표준의 개발을 요청하고 표준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협회의 조직 및 기능

- 제15조(협회의 조직) ① 협회는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과제의 선정, 표준초안의 작성, 표준(안)의 확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표준화 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협회의 기능) 협회는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 및 국가표준(안) 건의
2. 표준의 보급 및 확산
3. 국제표준화 동향조사 및 국제회의 참가활동
4.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표준화 과제에 대한 처리
5. 기타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장 표준의 보급 및 확산

제17조(표준의 공급) 협회는 이해관계자,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

에게나 표준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목록의 공개) ① 협회는 표준화 정 보의 확산을 위하여 협회 간행물 또는 협회 전산망에 정기적으로 표준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연구개발기관에게 당해 기관의 간행물 또는 전산망을 통한 표준목록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청구) 협회는 표준 및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는 경우 적정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채택된 한국 전기통신표준과 한국전산망표준은 이 지침에 의하여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4-97호(1994. 12. 29, 전기통신표준화지침), 정보통신부고시 제1994-98호(1994. 12. 29, 전 산망표준화지침), 정보통신부고시 제1995-129 호(1995. 10. 17, 정보통신표준화관련지적재산권취급지침)는 이를 폐지한다.



## 2. 정보통신 표준화 위원회 조직(잠정)

